

大學博物館, 法的根據 마련이 시급하다

柳元迪*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제41회 총회(1992.10.15~17)는 수많은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의 제 현안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통렬히 비난하고, 대학박물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회를 통한 입법을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글은 국회청원을 위한 자료로 준비된 것이다. -편 집 자-

(一)

해방이후 문화와 교육을 총괄하여 왔던 문교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육과 문화를 차례로 분가시켜 오다가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정책에만 전념키 위하여 교육부로 개칭되고, 동시에 종래의 문공부가 공보처를 분리시키면서 문화부로의 개칭과 함께 학자출신을 수장으로 맞아들여 문화 각계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새로 출범한 문화부는 종래 문화·예술을 ‘통제’하여 왔던 악역을 과감히 탈피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으로 새 방향을 설정하면서 우선 각종 법령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된 것이 종래 문교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도서관법’과 ‘박물관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이를 대치하여 ‘도서관 진흥법(1991.3.8)’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1.11.30)’으로 제정하였던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90년대 벽두 문화부와 교육부로의 개편은 단순한 부처명의 개칭이 아니라, 2000년대를 향한 문화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의 중책을 부여시킨 것이었기에, 두 기구의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는 너무나 당연하였다. 두 부처가 개편된지 2년 남짓 동안을 평가하기엔 성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도서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겠다고 하는 문화부의 정책방향은 참으로 신선한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교육을 ‘통제’로 일관 하면서 개혁의지를 가진 수많은 교육자를 교단에서 몰아내고 학생의 선발시험까지도 중앙에서 관장하여야만 속시원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부의 속성을 목도하면서 대학박물관이 처한 현

* 문박, 목포대 교수, 박물관장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 필자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二)

문화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도서관 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 진흥법’으로 통칭함)은 법 조문 체제가 매우 유사하며, 도서관과 박물관을 ‘진흥’하려는 입법목표가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관 진흥법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 외에 교육부 소관의 대학도서관과 초·중·고의 학교도서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박물관 진흥법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대학박물관이 제외되어 있다.

박물관 진흥법에는 박물관의 종류를 설립자의 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전국 각 대학의 70여개에 달하는 대학박물관은 이 법에 의한 ‘진흥’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동법 제4조 2항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동법은 1991년 상반기에 제정. 공포된 도서관 진흥법의 체제에 따라 대학박물관도 포함하여 대학박물관을 ‘진흥’하는 법으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부처에서 통제하는 대학 박물관에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진흥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국립대학교의 경우), ‘영세한 대학경영자더러 주머니 돈을 털어내어 박물관을 지으라고 하면 많은 반발을 살 우려’가(사립대학교의 경우) 있어 동법에서 대학박물관을 삭제하여 주도록 애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법 제18조의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대학박물관은 ‘박물관’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동법 제4조 2항에서 대학박물관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명칭을 도용할 수 없게 함으로서 문화창달과 평생교육기관의 문화시설을 보호. 육성하려는 문화부의 진흥정책이 교육부 관리들에겐 납득되지 않은 모양이다. 사실 우리나라 박물관 기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의 존재없이는 박물관의 진흥정책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학박물관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교육부에서 요청함으로써 박물관 관계법령의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회고하여 보건데 교육부는 과거 문교부 시절이래 각종 교육·문화시설의 보호. 육성에 등한시하여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고등교육기구로서의 ‘대학’이 ‘노인대학’ ‘××하게대학’ ‘×××대학’ 등으로 잠칭. 도용되어도 무감각상태이며, 관상. 사주쟁이가 ‘연구소’의 간판아래 ‘철학’을 논하는 등 각종 교육. 학술계의 기본이념이 혼돈되어 뒤범벅되는 데도 교육주변환경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지가 교육관계법에 전혀 구현되지 않다. 문화시설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지의 하나로 진흥의 차원에서 도서관 진흥법 13조와 박물관 진흥법 18조의 입법정신을 본받아 교육부에서도 교육과 학술에 관한 유사용어를 잠칭. 도용하지 못하도록 교육법에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三)

그렇다면 박물관 진흥법의 입안단계에서 대학박물관을 삭제토록 한 교육부가 교육부 자체의 법령으로 대학박물관을 보호, 육성하려는 다른 노력이 있었던가?

물론, 국립대학교의 대학박물관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1조 1항에 근거하여 있고, 사립대학교의 대학박물관은 대학설치 기준령 제12조 2항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의 경우 ‘둘 수 있는’ 부속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국립대학교의 경우 1983년에 국립학교 설치령에 ‘두어야만 하는’ 대학박물관이 삭제되었다가 대학박물관장 협의회에서 피눈물나는 투쟁의 결과 1985년에 다시 삽입되어 재생된 규정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박물관은 대학도서관과 함께 대학의 양대 부속시설로 증시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라 도서관 외에 새로이 전자계산소와 기숙사가 부속시설로 증시되는 한편, 대학박물관은 국립대에는 ‘형식적으로’, 또 사립대에는 ‘두지 않아도’ 되는 부속시설로 전락되어 왔다. 대학도서관은 학생수에 비례하여 건물시설, 열람석, 장서수,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사서직원, 예산확보, 기부금의 도서관 우선 투입 등에 대한 설치, 운영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대학의 증추기구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은 명확한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 연구인력, 유물의 구득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전자계산소의 경우 예산의 60%~80%가 국비에 계상되어 있지만, 똑같이 ‘두어야 되는’ 대학박물관은 단 한푼도 국비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다. 국비예산이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기성회 예산에서 겨우 운영비 일부만 보조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인력도 도서관의 경우 사서관, 사서, 사서보, 준사서 등의 직급에 따른 사서직이 체계화 되어 있으나, 수많은 국가귀속 매장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는 대학박물관의 경우 6급 상당의 학예연구사 1명만을, 그것도 극히 최근에야 배치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대학박물관의 보호, 육성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참담한 현실에서 그나마도 대학박물관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고미술사를 전공하는 몇몇 연구자들의 정열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이었다. 대학박물관은 수많은 조사, 발굴을 통하여 한국선사시대 연구의 새 지평을 열면서 엄청난 매장문화재를 창출하여 국가에 귀속시켜 왔으며,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외면속에서 묵묵히 교수, 연구에 전념하면서 많은 연구인력을 양성하였다. 특히 1950년대 이래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많은 유형문화재를 발굴, 감정, 구입, 수장하여 국보, 보물급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저지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각종 조사·발굴구역과 관련된 폭로성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적도 있으나, 정부와 대학당국의 변변한 예산지원없이 이나마의 대학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노력덕이었다. 때문에 각 대학박물관마다 그들의 족적을 뚜렷이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일반의 큰 박물관으로도 손색이 없는 대학박물관으로 건립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대학박물관이 어떠한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왔는가를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면 이러한 물의를 자숙의 차원에서 극복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학교경영자를 설득하여 구석진 공간이라도 자리잡아 박물관 간판을 걸어 인기도 없는 고교미술 연구지망생을 달래어가며 퇴약별에서 살갓을 태웠으며, 용역비를 아낀 소액의 비용으로 유물을 보존처리하고 감정하고 연구에 투자해 왔던 그들을 상심케 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기껏 일. 이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아 퇴약별에서 몇달간을 땀범벅으로 보낸 후, 그나마 남은 비용은 보고서 발간으로 소진하고 또, 위탁관리나마 발굴된 유물 몇점 소장할 수 있는 기쁨과 새로운 지식의 획득에 기꺼이 용역을 맡은 것이 사실이다. 이 작업은 수천만원 수억만원의 용역을 받아 시원한 건물안에서 주변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가며 연구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학문에 비할때 비애까지 느끼게 할 작업이기도 하다.

학교경영자를 설득하여 구석진 공간이라도 자리잡아 박물관 간판을 걸어 인기도 없는 고교미술 연구지망생을 달래어가며 퇴약별에서 살갓을 태웠으며, 용역비를 아낀 소액의 비용으로 유물을 보존처리하고 감정하고 진열대를 만들어 왔던 그들을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시정배로 매도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기껏 일. 이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아 퇴약별에서 몇달간을 땀범벅으로 보낸 후, 그나마 남은 비용은 보고서 발간으로 소진하면서도 위탁관리나마 발굴된 유물 몇점 소장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꺼이 용역을 맡은 게 대부분이었다. 수천만원 수억원의 용역을 받아 시원한 건물안에서 주변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가며 연구하고 컴퓨터로 간단히 정보를 처리하여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자연. 공학계는 어떻던가?

(四)

대학박물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구로는 60년대에 설립된 전국 대학박물관장 협회와 80년대에 창립된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가 있다. 근30년간 역대 대학박물관 협회와 고교미술 관계학회에서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예산지원을 위한 건의가 매년 되풀이 되었지만, 250여명의 직원 가운데 단 한사람도 대학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전문한 교육 부로서는 이 건의서가 한번 끄적거리려 본 낙서취급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91년도에는 대학박물관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건의가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양 기구에서 올려졌지만 회신조차 없었다.

대학박물관의 중대한 시련은 문화부의 발족과 함께 찾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각 대학 박물관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협약’이 그것이다. 대학박물관이 조사, 발굴한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는 보호법에 의하여 국가 귀속재산으로 처리되고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학박물관에 보관을 위탁한 유물은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보존하도록 되었다. 동 협약은 문화부의 발족에 따라 국가 귀속문화재의 일괄적인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확립된 문화시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박물관은 각종의 지시, 보고를 이행해야 하고(동 2조), 대학박물관끼리의 특별기획전에 유물의 출품전시도 중앙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동 3조), 중앙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다른 곳에 이관할 수 있으며(동 4조), 관리, 보관에 필요한 유물수장고와 시설의 비용을 자체부담하여야 하며(동 5·6조) 최악의 경우 유물을 회수할 수도 있는(동 10조) 등 대학박물관으로서의 굴종의 강요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대학박물관측은 동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국립대학교 박물관도 국가기관인 이상 국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협약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를 문화부와 협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국립대학교 박물관장이 보관한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 장관에 건의하였다. 동시에 대학박물관이 국가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인력의 확충, 건물의 신축, 예산의 획기적 배정, 법적근거의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나 교육부는 의연 관심밖이었다.

사실 문화부 산하의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국립 중앙박물관 등의 제 기관에서는 수십개 대학박물관에 산재되어 위탁보관되고 있는 국유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문제에 대하여 고심하여 왔다. 전시시설, 유물수장고, 전문연구인력, 운영체제, 행정사무 처리능력 등으로 보아 국가 매장문화재를 안심하고 위탁보관 시킬 수 있는 대학박물관은 우리가 보아도 20개 정도가 꼽혀질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립 중앙박물관측은 박물관 진흥법의 입법정신에 맞춰 적정한 시설과 전시유물, 전문연구인력을 갖추어 문화부 장관의 등록을 필한 대학박물관만이 박물관으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매장문화재를 위탁보관 시킬 수 있으며, 등록박물관만을 앞으로의 각종 조사, 발굴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보는 추세인데, 이러한 시각은 어떻게든 대학박물관을 내, 외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필자에게도 공감아가는 부분이다.

(五)

대학박물관이 각종 조사, 발굴을 담당하고 국가 매장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기 위하여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확보하여 박물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을 필한 등록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박물관 진흥법을 최초로 입안하였던 대로 도서관 진흥법처럼 대학박물관의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 진흥법 또는 교육관계법에 부수적으로 첨가, 삽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난점이 있으며, 대학박물관을 고려치 않은 기존법에 의하여 마련된 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도 수월할 것 같지 않다.

첫째, 대학박물관을 ‘두어야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둘 수 있는’ 대학설치 기준령에 교육법

또는 박물관 진흥법의 위임규정이 없이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박물관 진흥법이나 동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하기에는 대학박물관이 교육 시설이라는 현실 때문에 난점이 많다.

둘째, 대학도서관과 달리 대학박물관은 대학 외의 기관과 종적, 횡적 관계가 밀접하고, 재산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수많은 국가귀속 매장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며, 학술 용역사업을 통하여 대학 외부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잡한 기구이다. 동시에 대학 내의 교육시설로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부응하여야 하고, 인접학과의 효율적 교육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학박물관을 기존 교육관계 법령에 또는 박물관 진흥법에 몇 조문 삽입하는 형식의 법령근거로는 미약하다.

셋째, 박물관 진흥법 시행령(3조)에는 박물관의 등록절차가 시, 도지사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 바, 대학박물관은 교육부를 경유하여 문화부 장관에 등록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넷째, 설립주체에 따른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마다 등록절차가 달리 규정되고 있는 바, 등록절차에 대학박물관의 특성을 살려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시설기준과 등록요건(동 시행령 5조)도 대학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박물관은 대학교 내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독자적 자산으로서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조서, 등기부, 대장 등을 확보,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박물관 진흥법 시행령(제16조)에는 박물관 협력망을 중앙관 및 시, 도의 지방관 하에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박물관은 행정조직망이 아닌 대학박물관끼리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학박물관의 설치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모범인 박물관 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법 개정은 국회의 복잡한 입법활동을 거쳐야 한다. 박물관 진흥법의 개정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박물관 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대학박물관을 박물관 진흥법에 의한 위임명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 항	현 행	개 정
제 3 조 ① 항	① 박물관은 그 설립,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생략)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생략) 3. 사립박물관 : 민법.....(생략)	① 박물관은... 1. 국립박물관 (좌 등) 2. 공립박물관 3. 사립박물관 4. 대학박물관 :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
제 4 조	②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②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② 항	각급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항,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교의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대학교에 부속시설로 미술관을 설치한 대학은 없음)
-----	--	---

이렇게 박물관 진흥법에 의하여 대학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령’으로 위임받아 목적, 사업, 설립절차, 설치기준, 예산,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대학박물관 협력망, 학술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고유업무와 대학 교육시설로서의 양대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즉 박물관 고유기능 외에 교육시설로서의 사업목적과 설립기준을 명시하고, 국립대 대학박물관의 경우 국유재산의 취득·유지·관리 성격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토록 해야 하며, 적정시설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을 통하여 문화부에 등록박물관으로 등록토록 하여 박물관 진흥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도록 한다. 또한 법인으로 대학박물관 협회를 두어 각 대학박물관에서 발간한 각종 학술보고서를 심의하여 질적향상을 기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대학박물관이 문화시설로서 그리고 국가재산의 보관시설로서, 또 교육시설로서 제대로 구실할 수 있도록 대학박물관의 신축, 보관, 전시시설의 확충, 전문연구인력의 증원, 예산의 획기적 배정 등에 과감히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물관 진흥법의 구상단계에서는 법체계가 도서관 진흥법과 유사하였으나, 입안과정에서 대학박물관이 제외되고 국립중앙박물관마저 많은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박물관 진흥법은 흡사 사립박물관법으로 오인될 정도이다. 대학박물관의 설치근거를 동법에 위임법령으로라도 규정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여타 미진한 다른 문제들도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 문자 그대로 완벽한 법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입안단계의 입법정신이 끝까지 일관되어 완벽한 법체계로 평가되는 도서관 진흥법 및 동시행령과 비교하여 볼 때, 박물관 관계법령에서 눈에 띄게 미진한 부분이 바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임용문제인 바,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에 준하여 전문직으로서의 학예사(큐레이터)의 자격제와 임용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사서직은 도서관 관계학의 학·석·박사 학위와 도서관학 교육과정의 이수 및 도서관에서 근무한 연한에 따라 각종 사서자격증제(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가 확립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서관, 사서, 사서보로 임용하고 연한과 근무성적에 따라 상급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박물관의 경우(국립박물관도) 자격증제 없이 제한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직위명인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대학박물관은 없음)이 큐레이터로 통용되고 있다.

각종 문화시설의 수요가 제고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예하 지방박물관이 계속 신설, 계획 중이고, 민간에서도 전문박물관이 많이 세워졌으며, 미술계에도 각종 미술관과 화랑이 다수 설립되고 있으며, 각 시·도·군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재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전문직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학박물관도 대폭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자질높은 학예직의 수요에 대비하여 학예사(큐레이터) 자격증제가 하루 빨리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의 거의 모든 학과가 전문직과 관련되어 교사, 사서,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영양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각종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전문직종의 자격증제는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교직과 사서직에서 보듯이 1급자격, 2급자격, 준자격의 3단계로 되어 있다. 도서관 사서직은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으로 단일화 하고 있는데, 박물관 학예직은 관련학과가 광범위하고 박물관 또한 종합박물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예직을 역사자료, 고고자료, 미술자료, 민속자료, 자연사자료 등의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로서 박물관학을 비롯한 2~3개의 공통과목과 분야별로 4~5개 과목으로 국가시험을 거쳐 2급 학예사를 수여토록 하되, 이 자격증의 획득이 최고의 권위와 영예가 유지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해당 박사학위 소지자나 2급 학예사 자격 취득후 일정기간 박물관에서 근무한 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거쳐 1급 학예사로 자격이 경신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전문대학 해당학과 이수자에게는 준학예사 자격을 주고 일정기간 근무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2급 학예사로 승급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준학예사는 학예사보로, 2급 학예사는 학예연구사로, 1급 학예사는 학예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제와 임용제를 관련시키도록 한다.

한가지 덧붙여 현행 박물관 관계법령에서 박물관 전문종사자와의 임용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박물관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과목으로서의 박물관학은 있지만, 학과에 따른 전문직종으로서의 박물관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예직의 전문분야를 위의 5가지 정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사학과에서 많이 배출되었던 학예직은 앞으로는 80년대 후반에 대대적으로 설치된 전국 20여개의 고고학과, 인류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등에서 많이 진출될 것인 바, 대학박물관은 관계학과의 교수, 연구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예직을 양성하는데 훌륭한 교육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七)

1992년 8월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와 전국 대학박물관장 협의회, 그리고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91년에 이어 또다시 ‘대학박물관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의 회신에서(1992.11.3) 대학박물관의 신축, 전문연구인력의 확충, 위상제고 등을 통한 육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의 약속은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박물관 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대학박물관의 법적 설치근거가 선결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이 박물관으로서의 시설과 기능을 갖지 못한 채 허울뿐인 대학박물관까지도 박물관으로 보호, 육성하며 ‘진흥’시켜 달라고는 않는다. 어차피 ‘둘 수 있는’ 대학박물관이기 때문에 기왕 두었으면 박물관에 부합되는 건물과 시설, 그리고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그에 근거하여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로도 20여개의 대학박물관은 전문연구인력만 확충하면 박물관 진흥법에 의한 등록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시설과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령이 정비되어 대학박물관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여타의 대학박물관도 앞을 다투어 시설, 인력을 확충하여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70여개의 대학박물관 중 상당수가 당장 등록박물관으로서의 여건은 미비되었지만, 현재에 안주하여 법적근거의 마련을 주저한다면 대학박물관의 도약은 기대할 수 없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건물, 시설, 인력이 확충되기 위한 예산의 확보는 박물관 진흥법의 법령체계에 포함되어 대학박물관의 법적근거가 확실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 사립을 막론하고 도서관 진흥법과 동 시행령 및 대학 설치기준령에 설치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괄목의 발전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2. 12. 終稿)